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1.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이행요건(제9.7조)

유보내용            투자

1. 대한민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2008) 제 4 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2008) 제 5 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즉시 폐루에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였다는 서면통지를 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2008),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2008) 및 그 밖의 적용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
  -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 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한다.*
  
2. *제 9.17 조제 3 항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다음의 청구를 제 9 장(투자)의 제 2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이 제 1 항에 따라 통지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나. 청구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대한민국 기업이  
그 조치를 이유로 또는 그 조치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한 청구의 경우, 제 9 장(투자) 제 2 절이 준용되며,  
제 9 장(투자) 제 1 절에 따른 의무 위반 또는 위반주장에 대한  
제 9 장(투자) 제 2 절에 따른 모든 언급은 이 유보항목이  
없었다면 제 9 장(투자) 제 1 절에 따른 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될 그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제 1 항가호부터 마호에 열거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3. 제1항에 언급된 조치가 제12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인 범  
위 내에서, 이 유보항목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 9071 호, 2008. 3. 28.) 제 4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5조

2.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제 21 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상 약속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은 정부권한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특급배달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한도에서 제9.3조 또는 제10.2조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문단은 대한민국이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4.)  
제 168 조

3. 분 야 토지취득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된다.

가. *외국인토지법* 제 2 조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나.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단,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 2)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 3)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토지법*(법률 제 9186 호, 2008. 12. 26.) 제 2 조부터 제 6 조까지  
*농지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6조

4. 분 야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사 물품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총포·도검 또는 화약류의 제조·사용·판매·보관·운반·수입·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도검 및 화약류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5. 분 야                    취약집단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6. 분 야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국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7. 분야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마련되거나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범위 내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소득 보장 또는 보험
- 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 다. 사회 복지
- 라. 공공훈련
- 마. 보건, 그리고
- 바. 보육

기존의 조치

8.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GATS상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기술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가.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은 제외하고, 대한민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 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유보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 (None)”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고 기재한다.

나.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은 제외하고, 대한민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다. 부록 II-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대한

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이러한 변경은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16조제2항바호 관련 어떠한 제한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10.5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기존의 조치

9.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기존의 조치

10.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오디오 서비스와 관련,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1. 분야 환경서비스

**하위분야** 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 생활폐수 수집·처리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민간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12. 분야 원자력 에너지

**하위분야**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3. 분 야 에너지 서비스

하위분야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발전·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에 기재된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전력)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제9.7조제1항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14. 분 야 에너지서비스

하위분야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에 기재된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가스 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 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15. 분 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곡물, 곡분, 인삼, 홍삼의 중개서비스 및 곡물, 곡분, 홍삼의 도매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6. 분 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육상 운송 및 관련 부수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육상 운송 서비스(여객/화물) 및 관련 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7. 분 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8. 분 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저장 및 창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곡물, 곡분 및 축산물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9. 분 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우편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의한 우편 서비스의 운영 및 제공과 관련한 다음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병역의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하는 차량 정수의 결정과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대한민국 우정당국은 국내 및 국제 신서의 수집, 처리 및 배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에 대한 접근 및 운영의 권리를 포함한다.

다음의 상업 서류와 관련하여 민간 쿠리에 의한 서비스는 이 유보항목에서 제외된다.

- 가.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첩장 또는 송장
- 나. 무역 관련 서류
- 다. 외국 자본 또는 기술 관련 서류

- 라. 외국환 또는 그 관련 서류, 그리고
- 마. 회사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회사의 지점 간에 배달되는  
상업 서류로서 발송 후 12 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서류

우편 서비스는 외국인의 투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우편법*(법률 제 9240 호, 2008. 12. 26.)  
                  *병역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 21077 호, 2008. 10. 8.)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9432호, 2009. 2. 6.) 제4조제4항에 따  
                  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6호

20. 분 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방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이 유보항목이 부속서 I 에 기재된 대한민국의 유보 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유보항목과 불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기존의 조치        방송법(법률 제 9280 호, 2008. 12. 31.) 제 8 조, 제 9 조,  
                         제 69 조부터 제 72 조까지, 제 78 조 및 제 78 조의 2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36호, 2008. 12. 31.) 제14조, 제50  
                         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의3



22.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이행요건(제9.7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 9676 호, 2009. 5. 21.) 제 25 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08-135호, 2008. 12. 31.)

23. 분 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이행요건(제9.7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이 유보항목이 부속서 I 에 기재된 대한민국의 유보 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과 불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 9696 호, 2009. 5. 21.) 제 27 조 및 제 40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364 호, 2009. 3. 25.) 제 10 조 및 제 19 조  
동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 29 호, 2009. 3. 4.) 제 5 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08-135호, 2008. 12. 31.)

24. 분 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부동산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공  
급·관리·판매 및 임대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5. 분 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현지주채(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유보항목은 제12장(금융서비스)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현행의 합법적 투자은행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26. 분 야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의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판단할 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 소비자를 겨냥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그러한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위 문단에 의거하여 채택되는 어떠한 조치도 제 21 장(투명성)의 규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제 10.7 조(규정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해야 하며, 필요한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스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기타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 협정 발효일 현재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부속서II에 기재된 대

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법률 제 9932 호, 2010. 1. 18.)  
제 16 조의 3

27. 분 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8. 분 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하위분야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9. 분 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농협·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0. 분 야 어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1. 분 야           신문 발행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 9099 호, 2008. 6. 5.) 제 13 조, 제 14 조 및 제 26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47호, 2008. 12. 3.)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32. 분 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유아·초등·중등·고등·성인 및 기타교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 및 보건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 그리고 기타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3. 분 야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216호, 2008. 12. 26.)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9577호, 2009. 4. 1.)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34. 분 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하위분야 영화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 9096 호, 2008. 6. 5.)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64호, 2009. 3. 25.)

35. 분 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하위분야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재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문화재보호법*(법률 제 9313 호, 2008. 12. 31.) 제 17 조, 제 18 조 및 제 23 조  
동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호, 2009. 2. 3.) 제12조 및 제52조의2

36. 분 야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농어촌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7. 분 야            법률서비스

하위분야            외국법자문사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sup>1)</sup>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 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대한민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 · 승인 · 등록 · 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 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 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변호사 · 법무회사(로펌) · 법무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 상사연합 · 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 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 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변호사 · 법무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 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

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일시 입국을 위해서 상업적 주체가 요구된다.

## 제한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페루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페루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나. 이 협정 발효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대한민국은 최소한 제 2 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페루 법무회사(로펌)**란 페루 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페루 내에 있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

## 기존의 조치

38. 분 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소유권, 파트너십, 임원 및 이사의 국적 및 서비스 제공 범위를 포함하여 공인회계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 내에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국내적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국공인회계사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기존의 조치 공인회계사법(법률 제 8863 호, 2008. 2. 29.) 제 2 조, 제 7 조, 제 12 조, 제 18 조 및 제 23 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8호, 2009. 2. 3.) 제3조

39. 분 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외국세무사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소유권, 파트너십, 임원 및 이사의 국적 및 서비스 제공 범위를 포함하여 세무사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에서 세무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국내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기존의 조치 *세무사법*(법률 제 9348 호, 2009. 1. 30.) 제 6 조, 제 13 조, 제 16 조의 3, 제 20 조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302 호, 2009. 2. 4.) 제 97 조  
*세무 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20조 및 제22조

40. 분 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오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조치       기술개발촉진법(법률 제 7949 호, 2006. 4. 28.)  
                      원자력법(법률 제 9016 호, 2008. 3. 28.)  
                      대외무역법(법률 제 8356 호, 2007.4.1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7-3 호(2007. 4.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7-51 호(2007. 4. 12.)  
                      관세법(법률 제8136호, 2006. 12. 30.)

41.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9.7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제 10.1 조제 6 항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예를 들어  
법집행 및 교정서비스와 같이 정부권한의 행사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 또는

나. 제 12 장(금융서비스)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

기존의 조치

42. 분 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 9.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이행요건(제 9.7 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아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대한민국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연안해상운송은 대한민국선박을 위해 유보된다. 연안해상운송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간 해상운송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 정부, 공기업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 소유한 선박
- 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 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또는
- 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책임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는 선박. 대표자가 1 인보다 많은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내항 항만활동에 관한 조치는 제24.2조(필수적 안보)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기존의 조치

## 부록 II-가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기재된 GATS 제1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b>연구개발 서비스 :</b></p> <p>가.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p> <p>나.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p> <p>다. 학제간 연구개발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공급형태 1,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p>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다음 분야의 경우, GATS 상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기재된 GATS 제 16 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광업 부수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2 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p>포장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2 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p>컨벤션 대행 서비스 이외의 컨벤션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2, 3 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b>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b>  가.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제외</p>	<p>서비스 공급형태 1 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3 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나. 여행 대행 서비스           다. 관광객 안내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2, 3 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 에 대하여 "오직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된다"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